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2007.06.30)  
및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 중재규칙 (2013)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사건번호 2018-51

엘리엇 어소시엣 엘.피. (미국) (ELLIOTT ASSOCIATES, L.P. (U.S.A.))  
(이하 “청구인”)

대한민국  
(이하 “피청구국”)  
(“청구인” 및 “피청구국”의 집합은 “당사자들”로 칭한다.)

---

절차 명령 제 4 호

---

중재판정부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Mr. Oscar M. Garibaldi

Mr. J. Christopher Thomas QC

사무국

상설중재재판소

2019 년 7 월 22 일

## I. 절차 기록

1. 2019 년 4 월 1 일,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의 서면입장 제출 관련 투명성을 규정하는 절차 명령 제 1 호를 채택하였다:

### 10. 투명성

- 10.1 상설중재재판소는 협정 제11.21조 제1항에 명시된 정보 및 문서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보호정보는 사전 편집 후 재판소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대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10.2 협정 제11.21조 제1항 다호에 의거, 대중에 공개되는 문서는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함께 협정 제11.20조 제4항 및 제11.20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을 포함하되, 전문가 보고서, 증인진술서, 사실증거자료 또는 법적 권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0.3 협정 제11.21조 제2항에 따라, 심리는 일반에 공개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적절히 협의하여 심리에 대한 일반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당사자가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다루고자 할 경우, 심리 전에 이를 중재판정부에 고지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 방식을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10.4 용어 “보호정보”는 협정 제11.28조에 명시된 의미를 따르며, 상업 또는 기술 관련 기밀, 특수한 정치적 또는 기관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정부 또는 공공국제기관에 의해 기밀로 분류된 정보 포함), 또는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근거로 비공개를 지정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10.5 협정 제11.21조 제4항 다호에 의거,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보호정보로 주장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편집한 문서를 제출한다. 협정에 따라 상기대로 편집된 문서만 비분쟁당사자에게 제공되며, 또는 상기한 각 호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 10.6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보호정보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정 제11.21조 제4항 라호에 따라, 편집본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협정 제11.21조 제4항 마호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 10.7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정 또는 명령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동 문서의 어떠한 부분이든 보호정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상대 당사자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명령 제10.6항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한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 및 기타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동 조항을 근거로 내리는 모든 명령에 관계된 목적으로만 그 권한을 유지한다.

2. 이어 협정 제 11.21 조 제 4 항은 다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
-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재 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3. 2019 년 4 월 12 일자 전자우편으로, 상설중재재판소는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1 항에 따라, 청구인의 중재통보 (이하 “중재통보”), 피청구국의 중재통보에 대한 답변서 (이하 “답변서”) 및 청구인의 수정 청구서면 (이하 “수정 청구서면”)의 미편집 원본을 게시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의 확인을 요청하였다.
4. 2019 년 4 월 15 일자 전자우편으로, 피청구국은 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의 여러 부분에 편집을 제안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고, 2019 년 4 월 16 일에 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의 편집본을 제출하였다.
5. 2019 년 4 월 26 일자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제출한 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의 편집본에 관해 답변하며, 피청구국에 편집 제안의 철회, 또는 편집안이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4 항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설명하는 수정 요청안의 제출을 요청하였다. 청구인은 상기한 서면 3 부의 편집 필요성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임시방안으로 피청구국의 편집본을 상설중재재판소의 누리집에 게시하는 데에 동의하였다.
6. 2019 년 4 월 29 일자 서한으로, 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판정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피청구국에게 청구인의 2019 년 4 월 26 일자 전자우편에 관한 의견을 2019 년 5 월 6 일까지 요청하였다. 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판정부가 당사자들 간 발생한 문제의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청구인의 동의를 반영하여 서면 3 부의 편집본을 웹사이트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7. 2019 년 5 월 6 일자 전자우편으로,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2019 년 4 월 26 일자 전자우편에 회신하며, 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의 편집을 제안하는 사유를 설명하였다.
8. 2019 년 5 월 16 일자 전자우편으로, 청구인은 피청구국의 2019 년 5 월 6 일자 전자우편에 회신하였다.
9. 2019 년 6 월 26 일자 서한으로, 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판정부를 대리하여 당사자들에게 서면을 통해 제기된 특정 문제들에 대해 답변하고, 한국법 관련 사안들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다.
10. 2019 년 7 월 5 일자 서한으로, 당사자들은 상설중재재판소가 2019 년 6 월 26 일자 서한에 명시한 사안들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11. 2019 년 7 월 8 일자 서한으로, 상설중재재판소는 중재판정부를 대리하여 당사자들에게 2019 년 6 월 26 일 협의에서 제기된 특정 추가사안에 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12. 2019 년 7 월 12 일자 서한으로, 당사자들은 상설중재재판소의 2019 년 7 월 8 일자 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

## II. 당사자들의 입장

### 1. 피청구국의 입장

13. 피청구국은 한국법에 준하여 상기의 편집안을 제안하고, 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에 대한 피청구국의 편집본을 중재판정부가 승인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14. 피청구국은,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이하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성명 및 기타 정보 등 개인 정보를 다수의 일반에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한국의 법원은 항소가 예정된 판결문의 경우 편집된 형태로만 공개한다. 당사자들에게 미편집 완전본의 판결문이 발송되는 것과 대조적으로 상기와 같이 일반에 공개되는 판결문에서 개인 정보는 편집된다. 피청구국은 한국법을 준수하여 동 국내법상 제기될 수 있는 일체의 소송 가능성을 피하고자 중재통보, 피청구국 및 수정 청구서면에 제시된 개인의 성명을 편집하였음을 주장한다.
15. 피청구국은 또한 본 중재에 적용되는 규칙이 피청구국에게 한국법상 공개를 방지하고자 보호하는 정보를 편집할 권리를 부여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피청구국은 협정 및 절차 명령 제 1 호가 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 등의 서면 제출 시 어느 정보를 편집할 수 있는지 규정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협정 제 11.21 조 제 4 항 및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 항은 분쟁당사자가 "보호정보"를 편집하는 것을 허용한다. 협정 제 11.28 조는 "보호정보"를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를 방지하고자 보호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예: 대한민국 포함 협정 당사국의 법규)
16. 피청구국은 편집된 성명의 일부가 이미 일반에 알려진 점은 무관하다고 간주한다. 한국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성명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될 것을 요구한다. 피청구국은,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4 항에 명시된 "보호정보"의 정의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제외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해당 조항의 의미를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견해이다. 피청구국에 따르면 제 10.4 항은 오히려 다음 두 종류의 "보호정보"를 인정한다: 협정 제 11.28 조에 정의된 정보 및 추가적으로 협정 당사국이 기밀 또는 민감한 것으로 지정하고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17. 또한 피청구국은 언론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가 "일반에 알려진 개인의 모든 신상정보를 누구든지 공개하도록 허용하는 일반적인 예외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 정보가 언론에 의해 이미 유포되었다고해서 이를 근거로 해당 정보를 재공개하는 것이 허용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다.
18. 피청구국은, 본 중재의 문서 공개 관련 책임기관은 법무부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의 의미 내에서 법무부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을 지닌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법무부는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에 관계된 사항들 포함 일체의 개인정보의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법에 의해 요구된다. 피청구국이 주장하는 이러한 의무는 청구인, 중재판정부 또는 상설중재재판소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의 여부 또는 해당 개인정보가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19. 동 편집 요청의 적시성에 관하여, 피청구국은 협정 제 11.21 조 제 4 항의 편집 관련 제안은 문서 제출시에 해야 한다는 요건은 중재판정부의 구성 이전에 제출된 문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피청구국은 그러므로 중재판정부의 구성 시점에 편집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했으며, 청구인의 진술과 달리, 피청구국이 그러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단할 근거가 부재하다는 견해이다.
20. 피청구국은 또한 피청구국이 제안한 편집이 일반 대중, 미국 또는 청구인의 권리를 일체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 2. 청구인의 입장

21. 청구인은 중재판정부가 피청구국이 제안한 편집을 완전히 거부하고, 피청구국이 협정 제 11.21 조 제 1 항에 의거한 피청구국의 의무에 따라 모든 서면을 즉시 비분쟁당사자에게 전달 및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지시할 것을 요청한다.
22. 구체적으로, 청구인은 한국법상 공개를 방지하고자 보호하는 범위에 포함된 "보호정보"는 필요한 경우 보호하되, 협정 제 11.21 조는 서면의 공개를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관점에서, 피청구국은 그러나 "예시"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인용하고 편집안에 관한 "최소한의 모호한 정당성"만을 설명함으로써, 피청구국이 지적한 성명들이 한국법에 따라 공개를 방지하고자 보호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본 중재와 무관한 한국의 형법 또는 민사소송법의 특정 조항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은 피청구국이 제안한 편집을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23.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본 중재의 맥락에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의 관점에서, 당사자들, 중재판정부 및 상설중재재판소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바, 당사자들, 중재판정부 또는 상설중재재판소 중 누군가가 어째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문제의 서면들은 "개인 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개인의 신상 정보를 배열하거나 구성하고 있지 아니한 바, 피청구국은 동 서면들이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 근거 또한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24. 또한, 청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피청구국이 언론의 기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공개된 정보에 대한 편집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언론에 의하여 취재 및 보고를 목적으로 자체 수집 또는 사용 된 개인

정보"를 배제한다. 청구인의 관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동 조항의 근거이다. 청구인은 상기한 입장이 2016 년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되었으며, 정보가 이미 일반에 공개된 경우에도 언론 매체를 제외한 경우 모든 신상정보를 편집해야 한다는 피청구국의 입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부적절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25. 추가적으로, 청구인은 협정 제 11.21 조 제 4 항 다호 및 라호에 따라 피청구국이 중재판정부에 “정보를 제출한 시점”에 정보를 “보호정보”로 지정했어야 하고, 동 시점에 “해당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편집된 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피청구국이 2018 년 8 월 13 일에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피청구국은 현재 피청구국이 편집하고자 하는 다수의 성명을 언급하면서도 어떠한 편집도 제안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위와 마찬가지로 미편집된 답변서를 2018년 9월 9일 2인의 공동 중재인에게, 그리고 2018년 11월 27일 중재판정부 3인 전원에게 제출한 이후 2019년 4월까지 기다렸다가 편집이 필요한 보호정보의 존재를 주장했음을 강조한다. 청구인의 관점에서, 이러한 지연은 “중재판정부에 서면을 제출하는 시점”에 보호정보를 지정해야 할 의무를 명확하게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피청구국이 제안한 편집안의 “실질적 정당성이 부족함에 근본적으로 대치”된다. 청구인은 이에 피청구국이 현재 시점에서 편집을 요청 할 권리를 포기했다고 판단한다.
26. 청구인은 나아가 피청구국이 제안한 편집안이 “극도로 인공적”이라고 주장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조는 성명과 더불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언급함에 주목하며,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제출한 서면에서 문체의 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기타 정보를 “미편집된 상태로 두었다”고 한다.
27. 끝으로 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청구국의 편집안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동 편집안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함을 입증해야 한다는 피청구국의 견해가 그릇되었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그러한 평가는 협정 또는 절차 명령 제 1 호에 근거하지 아니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 편집안이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을 부정한다.

### III. 중재판정부의 분석

28. 당사자들의 서면제출 관련 편집에 관한 규정은 협정 제 11.21 조 제 4 항 및 제 11.28 조와 더불어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 항이다. 협정 제 11.21 조 제 4 항은 다음을 규정한다: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모든 보호정보는 다음 절차에 따라 공개로부터 보호된다:

- 가. 라호를 조건으로 분쟁당사자들이나 중재판정부는 정보를 제공한 분쟁당사자가 나호에 따라 명백하게 지정한 경우 보호정보를 비분쟁당사국이나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 나.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분쟁당사자는 그 정보가 중재판정부에 제출될 때 그 정보를 명백하게 지정한다.
  - 다.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한다. 편집본만이 제1항에 따라 비분쟁당사국에게 제공되고 공개된다.
  - 라. 중재판정부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의 지정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가 제기하는 이의에 대하여 결정한다 중재판정부가 그러한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하는 경우, 그 정보를 제출한 분쟁당사자는 1) 그러한 정보를 포함하는 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거나, 2) 중재판정부의 결정 및 다호에 따라 지정을 정정하여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하는 데 동의할 수 있다. 이 중 어떠한 경우든 다른 쪽 분쟁당사자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나,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가 1)에 따라 철회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또는 그 정보를 처음 제출한 분쟁당사자의 2)에 따른 지정에 합치하게 정보를 재지정한 완전본과 편집본을 다시 제출한다. 그리고
  - 마. 분쟁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되는 정보가 적정하게 지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서면결정을 내리는 것을 검토한다. 그러한 요청 후 6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가 결정을 내리는 경우, 이는 중재판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중재판정부가 내리는 어떠한 결정 또는 판정도 그 결정에 합치하여야 한다. 공동위원회가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하는 경우, 비분쟁당사국이 중재판정부의 결정에 동의한다는 서면진술을 공동위원회에 그 기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중재 판정부의 결정이 계속 유효하게 된다.
29. 협정 제 11.28 조는 “보호정보”를 "비밀 영업정보 또는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를 방지하고자 보호하는 정보"라고 정의한다.
30. 절차명령 제10항 (“투명성”)은 또한 다음을 규정한다:
- 10.1 상설중재재판소는 협정 제11.21조 제1항에 명시된 정보 및 문서를 다음 각 호에 준하여 보호정보는 사전 편집 후 재판소의 누리집에 게시하여 대중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 10.2 협정 제11.21조 제1항 다호에 의거, 대중에 공개되는 문서는 분쟁당사자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변론서, 이유서 및 준비서면과 함께 협정 제11.20조 제4항 및 제11.20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을 포함하되, 전문가 보고서, 증인진술서, 사실증거자료 또는 법적 권한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10.3 협정 제11.21조 제2항에 따라, 심리는 일반에 공개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들과 적절히 협의하여 심리에 대한 일반의 접근을 허용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결정한다. 당사자가 보호정보로 지정된 정보를 심리에서 다루고자 할 경우, 심리 전에 이를 중재판정부에 고지하여 해당 정보의 공개 방식을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 10.4 용어 “보호정보”는 협정 제11.28조에 명시된 의미를 따르며, 상업 또는 기술 관련 기밀, 특수한 정치적 또는 기관에 관련된 민감한 사안(정부 또는 공공국체기관에 의해 기밀로 분류된 정보 포함), 또는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근거로 비공개를 지정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 10.5 협정 제11.21조 제4항 다호에 의거,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보호정보로 주장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편집한 문서를 제출한다. 협정에 따라 상기대로 편집된 문서만 비분쟁당사자에게 제공되며, 또는 상기한 각 호에 따라 일반에 공개된다.
- 10.6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보호정보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정 제11.21조 제4항 라호에 따라, 편집본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판정부는 협정 제11.21조 제4항 마호에 따라, 공동위원회의 판단을 구하여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결정을 내린다.
- 10.7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정 및 명령에 관하여, 각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정 또는 명령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동 문서의 어떠한 부분이든 보호정보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상대 당사자가 그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 명령 제10.6항에 명시된 절차를 적용한다. 중재판정부는 최종 판정 및 기타 최종 결정과 관련하여 동 조항을 근거로 내리는 모든 명령에 관계된 목적으로만 그 권한을 유지한다.

31. 당사자들은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4 항 관련 해석에 이견을 보인다. 피청구국은 제 10.4 항이 두 종류의 정보 - 협정 제 11.28 조에 정의된 정보 및 추가적으로 협정 당사국이 기밀 또는 민감한 것으로 지정하고 아직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 - 를 인지하므로, 협정 제 10.28 조에 정의된 “보호정보”의 종류의 범위를 확장한다는

견해이다.<sup>1</sup> 반대로 청구인은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4 항이 “이미 공개된 모든 정보로부터 ‘보호정보’의 정의를 명시적으로 배제한다”고 주장한다.<sup>2</sup>

32. 중재판정부는 용어 “보호정보”는 “협정 제 11.28 조에 명시된 의미를 따르며 당사자가 상업적, 기술적 비밀유지, 또는 특별히 정치적이거나 특정 기관에 민감한 사안(정부 또는 공공 국제 기관에 의해 기밀로 분류된 정보 포함), 또는 당사자가 제 3 자에 대한 비밀유지의 의무를 근거로 비공개를 지정하여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고 규정한 절차 명령 제 1 호 제 10.4 항에 대한 피청구국의 해석에 동의한다. (강조부분 추가됨.) “포함한다”는 문구는 포함의 대상으로 기술되는 내용이 협정 제 11.28 조에 정의된 등급에 추가되는 정보의 등급에 해당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함”의 요건은 협정 제 11.28 조에 정의된 보호 정보가 아닌, 제 10.4 항에 정의된 보호정보의 추가적인 등급에만 적용된다. 제 10.4 항에 대한 동 해석은 당사자들 및 중재판정부 중 어느 누구도 협정의 용어를 수정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없으며 제 11.28 조에 있지 아니한 요건(“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함”)을 해석할 수 없다는 입장에도 일치한다.
33. 협정 제 11.28 조의 “보호정보”의 정의는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를 특별히 배제하지 아니한다. 중재판정부는 따라서 제 11.28 조에서 “보호정보”를 “당사국의 법에 따라 특별취급을 받거나 달리 공개를 방지하고자 보호하는 정보”라고 정의한 바, 동 문제를 다루는 한국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가 배제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강조부분 추가됨.)
34. 당사자들은 동 사안에 관하여 또한 이견을 보인다. 피청구국은 한국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보호를 다루는 개인정보 보호법<sup>3</sup>은 일반에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중단한다는 어떠한 예외도 규정하지 아니하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인 대한민국 법무부에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그러므로 본 중재의 서면에 포함된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국이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의 편집을 청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이 피청구국으로 하여금 그러한 정보를 편집하도록 요하지 아니한다는 입장이다. 청구인은 또한 당사자들, 상설중재재판소 및 중재판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며, 서면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파일”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청구인은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본 중재의 서면이 공개되기 이전에 서면상의 성명들이 편집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sup>1</sup> 피청구국의 2019년 5월 6일자 전자우편.

<sup>2</sup> 청구인의 2019년 4월 24일자 전자우편.

<sup>3</sup>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항은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한다.

35.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 및 관련 법적 권한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중재판정부는 한국법에 따라 공개를 방지하고자 보호하는 정보의 범위는 언론의 유포를 통해 일반에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도 포함한다고 판단한다. 보호정보에서 제외되는 항목을 나열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 58 조 제 1 항 4 호는 “언론이 취재 및 보도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 또는 이용하는 개인정보”에는 상기의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이미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일반적인 예외를 일체 두지 아니한다. 실제로 언론 자체에 대한 예외는 언론이 “취재 및 보도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고자 “수집 또는 이용”하는 정보에만 적용되며, 그러한 정보를 제 3 자가 이용하는 데에는 동 예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조항에 대한 상기의 해석은 제 58 조 제 1 항 4 호의 예외가 “언론이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설명하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통역 지침과도 일맥상통한다.<sup>4</sup> 중재판정부는 한국법상 상기 금지규정의 예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피청구국이 편집을 제안하는 성명의 개인들이 개인정보의 공개에 동의했다고 간주할 증거 또한 부재함을 확인한다.<sup>5</sup> 협정 제 11.28 조에 따라 동 사안은 한국법의 소관이고 중재판정부는 해당 법을 이행해야 하므로, 동 사안에 관한 한국법의 입장은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요한다는 점에서 다소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현 목적의 논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6. 당사자들은 또한 본 중재에 제출되는 문서들의 한국 내 공개의 책임이 있는 법무부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조 제 5 항에서 의미하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이견을 보인다.<sup>6</sup> 동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 장 및 제 4 장 포함을 포함하는 관련 규정이 개인정보처리자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에 기인한다.
37. 청구인, 상설중재재판소 또는 중재판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무부 내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나,<sup>7</sup> 당사자들의 서면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법무부(또는 법무부 내 설치된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정보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 당사자들의 (개인의 고유명의로만 구성된) 서면에 포함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조 제 5 항에서 의미하는 “공식 또는 사업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법무부 (또는 법무부 내 설치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물음은 중재판정부 소관의 문제, 즉, 당사자들이 제출한

<sup>4</sup> 개인정보 보호법 통역 지침;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지침/공식안내 및 규칙에 관한 해설 (2016년 12월), 증거자료 C-312.

<sup>5</sup> 편집안 관련 청구인의 서면 참조 (2019년 7월 5일), 제 13-17 항 (대법원 사건번호 2014다235080 관련 논의, 2016년 8월 17일, 증거자료 C-311).

<sup>6</sup> 개인정보 보호법 제 1 조 제 5 항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으로 정의한다.

<sup>7</sup> 법무부 내 개인정보처리자의 운영을 규제하는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참조.

서면에 포함된 개인정보가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

38.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다. 또한 특정한 예외에 따라서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 또한 보호된다.<sup>8</sup> 이러한 정보는 그것이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하에 있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파일”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따라서, 예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7 조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에 명시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인정보”를 제 3 자와 공유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sup>9</sup> 이와 유사하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 58 조에 명시된 예외는 개인정보처리자 이외의 기관이 통제 또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적용된다.<sup>10</sup>
39. 따라서, 본 중재의 목적을 위하여, 법무부(및 보다 광위에서 대한민국)는 동 기관이 한국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편집을 요청하는 정보가 “공식 또는 사업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파일”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법상 본 중재에서 청하는 문서의 편집을 요청할 권리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협정 제 11.28 조에 따른 주안점은 한국법상 개인정보는 공개를 방지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재판정부는 문체의 개인들에 관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누리집에 게시한 당사자들의 서면에서 동 개인정보를 편집했음을 확인한다. 법무부 누리집에 게시된 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의 편집본은 피청구국이 상설중재재판소에 게시를 요청하여 (현재 임시로 게시된) 것과 동일하다. 중재판정부는 따라서 피청구국이 편집을 요청하는 개인정보가 한국법상 “보호정보”를 구성함을 수용한다.
40. 남은 사안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국이 동 보호-개인정보의 편집을 요청할 권리를 포기했는지에 대한 결정이다.
41. 피청구국은 상설중재재판소가 당사자들에게 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의 미편집 원본을 재판소의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자 2019 년 4 월 12 일자로 송부한 전자우편에 대해, 2019 년 4 월 15 일자 회신을 통해 중재통보, 답변서 및 청구인이 2019 년 4 월 4 일 제출한 수정 청구서면 등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에 편집을 제안한다는 의사를 전달하였다. 앞서 피청구국은 2018 년 8 월 18 일에 청구인에게, 이어 2018 년 11 월 15 일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후 2018 년 11 월 28 일에 중재판정부의 요청에 직접 답변한 바 있다. 두 답변서는 모두

<sup>8</sup> 개인정보 보호법 제 2 조 제 1 항의 “개인정보”의 정의 참조. 개인정보의 “처리”는 제 2 조 제 2 항에 별도로 정의된 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 조 제 5 항에 정의됨.

<sup>9</sup> 제 17 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 할 수 있다: …” (강조부분 추가됨.)

<sup>10</sup> 제 58 조에 따라, “다음 개인정보에 관하여는 제 3 장부터 제 7 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조부분 추가됨.)

편집본이 아니었다. 마찬가지로, 청구인은 2018년 7월 12일 피청구국에, 2018년 11월 27일 신규 구성된 중재판정부에 중재통보를 직접 전달하였다. (앞서 의장중재인을 제외한 공동 중재인들에게만 중재통보 및 답변서가 전달된 바 있다.)

42. 중재판정부는 청구인과 피청구국이 각각의 중재통보 및 답변서를 상대방사자에게 전달한 시점은 절차 명령 제 1호가 발령되기 이전이었던 바, 협정 제 11.21 조 제 4항 다호의 규정이 절차명령 제 1호의 제 10.5항과 유사함을 확인한다. 그러므로, 협정 제 11.21 조 제 4항 다호에 따라, “분쟁당사자는 보호정보라고 주장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 그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편집본을 제출해야 한다.” (강조부분 추가됨.) 표면적으로 동 규정은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에만 적용되고 상대방사자가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편집 제안을 희망하는 상황을 다루지는 아니한다.
43.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2018년 8월 19일 청구인에게, 그리고 2018년 11월 28일 중재판정부에 피청구국의 답변서를 전달할 시점에 편집본을 제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 피청구국은 상기 서면 3부(중재통보, 답변서 및 수정 청구서면) 전체에 편집을 제안할 의향이 있음을 알린 2019년 4월 15일에 와서야 편집을 제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피청구국은 답변서를 청구인 및 중재판정부에게 전달한 때에 동 답변서에 협정 제 11.24 조에서 의미하는 “보호정보”에 해당하는 정보를 일체 지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미편집된 답변서를 제시하는데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44. 중재판정부는 청구인이 중재통보를 2018년 7월 12일 피청구국에 또는 2018년 11월 27일 중재판정부에 전달한 시점에 동 문서에 대한 편집을 일체 제안하지 아니했음을 확인한다. 그럼에도, 협정 제 11.24 조에 동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조항이 부재한 바, 중재판정부는 피청구국이 중재통보에 대한 편집을 제안할 권리 또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
45. 본 중재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 체계에 관한 추가 규칙을 규정하는 절차 명령 제 1호는 2019년 4월 1일에 발령되었다. 절차 명령 제 1호의 제 10.5항은 “협정 제 11.21 조 제 4항 다호에 의거, 특정 정보가 보호정보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당사자는 보호정보로 주장되는 내용이 포함된 문서를 중재판정부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편집한 문서를 제출한다”고 규정한다. 절차 명령 제 1호의 제 10.6항 또한 “당사자가 상대 당사자의 보호정보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협정 제 11.21 조 제 4항 라호에 따라, 편집본을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후자의 조항은 문서를 제출한 당사자가 아무런 편집안을 제출하지 아니했으나, 상대방사자는 상대방사자가 제출한 문서에 보호정보가 포함되어 편집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아니한다. 중재판정부는 유추를 통해 제 10.6항을 동 상황에 적용할 수 있고, 따라서 상대방사자가 제출한 서면에 편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당사자는 문서를 수령한 후 21일 이내에 중재판정부의 결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피청구국은 2019 년 4 월 4 일 청구인이 수정 청구서면을 제출한 이후 21 일 이내에 동 문서의 편집에 관한 모든 희망사항을 전달할 의무가 있었다. 중재판정부는 2019 년 4 월 15 일에 피청구국이 상기 수정 청구서면에 편집을 제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동 기한을 준수했음을 확인한다. 따라서, 피청구국은 동 문서의 편집을 제안할 권리를 지닌다.

#### IV. 중재판정부의 결정

46. 상기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다음을 결정한다:

- (a) 피청구국은 피청구국의 답변서에 편집을 제안할 권리를 포기하였다;
- (b) 피청구국은 청구인의 중재통보 및 청구서면과 청구인의 수정 청구서면에 편집을 제안할 권리를 지닌다;
- (c) 상기 (a)에 의거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차후 중재판정부에 제출되는 보호정보의 편집을 요청할 수 있는 피청구국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 (d) 비용에 관한 중재판정부의 결정은 보류한다.

중재지: 영국 런던

(서 명)

---

Dr. Veijo Heiskanen  
(의장중재인)

중재판정부 대표